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감 사 담 당 관 실

# 구미시청립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7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,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과 청렴시책을 추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다.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제6조, 제9조~제13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미시”를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의회”를 “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,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「청렴구미 만들기」”를 각각 “「청렴구미만들기」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임명하거나 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무원 2인”을 “5급 이상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의원 2인”을 “시의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학계·법조계·경제계·시민단체 인사

4. 그 밖에 부패방지·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
③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 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임기전이라도”를 “임기 전이라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임기중”을 “임기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장기치료”를 “장기 치료”로, “국외출국”을 “국외 출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부패관련”을 “부패 관련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결 한다”를 “의결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심의 조정한”을 각각 “심의·조정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, “자료제출”을 “자료 제출”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

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2조 중 ““청렴구미 만들기””를 ““청렴구미만들기””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  
위 안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정한 사항”을 “규정한 사항”으로, “사항을”을 “사항은”으로  
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
4. (생략)

제4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- 1. 시장이 추천하는 시 소속 공무원 2인
- 2.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인
- 3. 구미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가 추천하는 시민단체인사 2인, 관계전문가 2인, 지역상공인 1인

<신설>

② (생략)

③ 협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요원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1인(청렴관련 업무담당 주사)과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.

<신설>

4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협의회 구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- 1. ----- 5급 이상 공무원
- 2. ----- 시의원
- 3. 학계·법조계·경제계·시민단체 인사
- 4. 그 밖에 부패방지·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협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
2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
3.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(생략)

제8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.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6조(위원의 해촉) -----  
-- 각 호-----  
---- 임기 전이라도 -----  
-----.

1. ----- 임기 중 -----  
--
2. ----- 장기 치료-----  
----- 국외 출국-----  
-----
3. ---- 부패 관련 -----  
-----  
-----
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  
집요구가 있는 때

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한 때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 
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 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9조(의결사항의 처리) ①위원장  
은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  
항 중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  
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  
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 
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  
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 
여야 한다.

제10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협  
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  
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으로  
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 
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 
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 
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 
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 
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

<삭 제>

<삭 제>

③ -----  
-----  
----- 의결한다.

제9조(의결사항의 처리) ① ----  
----- 심의·조정 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심의·조정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--  
-----  
----- 관계 공무원----  
----- 자료 제출  
-----.

제11조(수당 등) -----  
----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 
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 
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  
-----

있다.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예산지원) 시장은 “청렴구미 만들기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---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2조(예산지원) ----- “청렴구미 만들기” -----  
----- 범위 안  
-----.

제13조(운영세칙) ----- 규정  
한 사항 -----  
----- 사항은 ---  
-----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(容認)하지 아니하는 공직 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9조(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
2. 법 제7조,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
3.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.

## □ 「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)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(이하 "민관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공공·기업·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의 체계 구축,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공·기업·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·평가에 관한 사항
4.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·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
5.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대국민 청렴 교육·홍보·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)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감사담당관
입 안 자	과 장	이 순 애
	팀 장	이 종 연
	담 당 자	홍 선 애 (480-6092)